

직권조치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14년 07월 17일

동화동장  인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박**	박** 1974-09-05	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6길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4-07-17
박**	최** 1996-09-20	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6길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4-07-17
권**	권** 1984-10-05	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40길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4-07-17